

(조례 제 호)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자문" 을 "자치"로 한다.

제 1 조중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를"동정의 주요시책과 법령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동정에 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동정 자치위원회"라 한다.

제 2 조중"동장의 자문에응한다"를"자문. 심의한다"로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정의 기본시책및 자치에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환경등에 관한사항
4. 주요 동정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사항
5.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사항
6. 주민 어른수렴과 진정처리에 관한사항
7. 동반설치및 관할구역 조정건의에 관한사항
8. 재해대책과 지역주민 안정문제의 협의조정
9. 기타 동장이나 지역구의원이 부의한 사항

제 3 조 제1항중 "1인과 1만명 미만인동은 15-20인이내 인구 1만명 이상 인 동은20-25인이내"를"1인을 포함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동조 제2항중 "동민중에서 주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자중에서 동장이" 를"당해 동민중에서 동장이 당해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 4 조중 "1년" 을 "2년" 으로 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격월제"를 "매월"로한다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제 9 조중 "개최하였을 때에는" 을 "개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할 사항이 있을시" 로 한다.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수당)위원에게는 정기회의 참석시에산의 범위안에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의 "발생했을" 다음에 "구의원과 협의하여"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新 · 舊條文對比表

현	행	기	정	안
<p>□ 제명:광주직할시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정의 기본시책에 관한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사항 4. 주요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 건의에 관한사항 6.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사항 7. 주민어른 수렴과 지역안정 문제의 협의조정 8. 반 운영에 관한사항 9. 기타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명:광주직할시서구 동정자치위원회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동정의 주요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의한 동정에 관하여 자문·심의하기위하여 동정자치위원회-----</p> <p>제2조(기능) -----</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동정의 기본시책및 자치에관한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3. 주민의문화·복지후생.환경등에 관한사항 4. 주요동정시책의결정·변경·폐지에 관한사항 5.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주민어른수렴과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 7. <u>통반설치및 관할구역조정 건의에</u> 관한사항 8. <u>재해대책과 지역주민 안정문제</u>의 협의 조정 		

新 · 舊 條 文 對 比 表

현행	개정안
<p>② 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p>	<p>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p>
<p>제7조(안전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p>	<p>제7조(안전배부)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 사무장이 된다.</p>	<p>제8조(간사)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보고) ----- 개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시 -----</p>
<p>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위원에게는 정기회의 참석 ----- ----- -----</p>
<p>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u>구의원과</u> 협의하여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한 때</p>	<p>1— 4 (현행과 같음)</p>
<p>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p>	

新 · 舊條文對比表

현행	개정안
<p>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키 어려운 때</p> <p>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p> <p>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p> <p>② 제1항의 사유로 임기전 해촉한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12조(의견의 청취)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제정(안)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를 다음과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광주직할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결정함에 있어 소관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입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적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해당동장이 되며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소속과장중에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본 회의에 사업주체측 관계자를 참석시켜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발표하게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 시설지구안의 주택건설심의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법령의 종합검토
2. 건축적지 여부
3.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 시설검토
4.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
5. 급수가능여부 및 하수시설의 적정여부

6. 군사보호구역 저축 여부
7. 주위환경과의 조화와 층수 조정
8. 진입도로 연결 등 간선시설
9. 준공업지역과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의 지장 여부
10. 수해침수 여부
11.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 여부
12. 산림훼손 여부
13. 교통 및 항공 장애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통괄관리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 발언케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심의회 위원 및 간사 서기와 기타 심의사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사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되었거나 승인 신청된 주택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